

위성시대의 방송정책과 과제

鄭允植

江原大學校 新聞放送學科

I. 방송환경변화의 특성

한국의 방송체제는 방송의 자유와 규제 등 전통적인 방송정책상의 과제들을 그대로 남겨둔 채 '뉴미디어'의 도입과 '민영화'로 대변되는 신방송질서 속에서 새로운 진로와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공영방송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던 한국의 방송체제는 서울방송의 탄생을 계기로하여 공·민영 혼합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지금은 신기술 개발에 따른 케이블과 위성방송의 도입이 적극 추진되고 있으며 대통령 공약사업이었던 지역민방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방송부문에 있어 '민간개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방송정책의 목표는 '언론의 자유'를 실천하는 데 그 1차적 목표가 설정되었으나 UR, EU, NAFTA, APEC 등 이른바, 세계화, 지역화, 개방화로 대변되는 신국제질서속에서 방송정책의 목표도 첫째, 언론의 자유실천, 둘째, 문화적 다원주의의 구현, 셋째, 산업기술·국제경쟁력제고라는 다원적인 목표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다시말하면 이제 우리나라 방송정책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공익성 등 규범적인 방송정책상의 과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아울러 지자체,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지역방송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뿐만 아니라, Cable TV,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를 도입하여 방송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미 선진제국에서는 기존의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의 실현, 공중파 민방에 대해서는 지역성과 문화적 다원주의의 실현, 뉴미디어(Cable TV, 위성방송)에 대해서는 산업기술발전·국제경쟁력제고에 목표를 두는 등 매체별 기능적 역할분담체제로 방송구조를 개편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의 케이블과 위성방송 등 신규 방송매체의 도입은 방송시장의 진입규제 완화에서 비롯된 신규 방송사업자의 첨단 정보산업에 대한 산업정책적 관심, 전기통신 네트워크의 구조변화라는 통신정책적 관심, 그리고

방송매체의 구조개편이라는 미디어 정책적 관심으로 인하여 단순한 기술개발의 차원을 넘어 학문적, 정책적 관심이 되어 왔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변모하는 방송환경이나 방송 구조 개편과정은 방송이 추구해야 할 이념과 방향이 미리 설정된 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보다는 정치, 경제, 문화·사회적 요인이 복합된 전환기적 상황속에서 신규 방송매체의 도입이 결정되고, 방송의 “이념과 정책방향”이 사후적으로 추인(ad hoc justification)되는 절차를 경험하고 있다. 변모하는 방송환경에 적용할 만한 제도와 이념과 방송의 진로와 청사진에 대한 논의가 성숙되기도 전에 선진국과 비슷한 추세로 신방송질서가 개편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정치경제적, 국제적 환경변화와 방송시장에 대한 수요예측의 곤란 및 전문성의 부재, 그리고 방송시장의 진입규제완화·국제경쟁력 제고라는 산업적 이해 때문에 다미디어·다채널을 단계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일거에 수용함으로써 경쟁시장을 유도한 후, 아울러 현실의 교정력을 통해 방송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수정·보완하고 있는 추세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위성방송의 도입과정에서는 그 사회적 확산성과 영향력으로 인해 방송의 규제권을 확보하려는 방송규제기관, 신규채널의 확보로 공영방송의 기능을 강화시키려는 기존 방송사를 비롯한 언론사들의 압심, 그리고 전자신문의 육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산업체의 관심이 투영된 분쟁과 갈등의 혼미과정이 예상된다.

다수의 방송사업주체들의 참여에 따른 방송시장의 진입규제완화는 기존의 공중파 방송을 비롯, 케이블방송사업자, 지역방송사업자, 언론사, 신규방송사업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예상됨은 물론 공영방송, 뉴미디어, 지역민방의 효율적 정착과 한국 방송구도의 개편이라는 시각에서도 주목을 요한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위성방송의 도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 신규 방송사

업참여자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는 물론 기존의 공영방송, Cable TV와 위성, 지역민방 등 매체별로 경쟁적 협력관계로 정착시킬 수 있는 절묘히 조정할(규제) 수 있는 “규제력”, “조정력”, “관리력” 등 관리체계의 효율화가 요청된다.

위성방송은 그 특성상 한국방송정책 전분야에 걸쳐 관련되어 논의되어져야 하며, 아울러 통신정책 부분과도 동시에 고찰해야 하는 총체적 성격을 지닌다. 다른 방송, 통신 정책방향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성방송만을 고립적으로 분석하여 그 대안과 법제도를 검토한다는 것은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인식을 전제로 최근 위성방송 정책결정 과정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위성방송 사업자의 선정문제를 비롯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위성방송의 정책방향을 검토하기로 한다.

II. 위성방송의 특성

무궁화호가 예정대로 1995년 발사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위성방송 시대가 개막된다. 무궁화호를 통하여 운용하려고 위성사업은 지리적으로는 국내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그 사업의 주된 분야는 통신분야와 방송분야이며 통신용 중계기가 12개, 방송용 중계기가 3개 탑재되어 있다.

위성방송의 전송방식이 디지털방식으로 설정됨에 따라 무궁화호 DBS(직접위성방송)채널은 12개 방송중계기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기술적 잠재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현시점에서 실질적으로 할당할 DBS채널수와 운용방침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채널적 특성으로 인해 다수의 방송사업주체들의 참여가 예상되고 있다.

위성방송의 전송방식은 방송정책 및 사업분야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디지털 전송방식의 설정은 방송영역 뿐만 아니라 국제자원에 대한 국가관할권의 확대 기술정책측면에서 위성방송전송방식과 고선명 TV의 연계발전문제 전송방식과 국가경제 : 국내시장보호와 해외시

장개척, 국내 디지털 전송방식의 개발능력/보급시기, 총체적인 국가경쟁력 제고의 가속화 차원에서 선정된 것으로 이해된다.

위성채널은 직접위성방송의 전송 외에도 CATV와 연계하여 이른바 Space Cable Net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으며 HDTV 프로그램을 전송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이른바 '뉴미디어의 십자로'이며 그 기술적 특성상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서비스의 영역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위성방송은 전국을 1파(波)로 커버하기 때문에 공중파 방송에 해당하는 사회적 영향력과 확산성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국경을 초월하는 방송'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아 제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침투 논쟁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유럽의 '국경없는 TV계획'과 같이 남북방송 교류도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위성방송의 전송유형은 ①방송위성을 이용하여 TV방송을 행하는 직접위성방송과 ②통신위성의 채널을 이용하여 CATV프로그램을 중계하는 Space Cable Net서비스와 ③통신위성의 채널을 이용하여 수신자에게 직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CSTV(Communication Satellite TV : 유료방

송이라고도 함)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에는 방송위성 뿐만 아니라 통신위성을 통해 중계되는 TV프로그램들도 소형의 파라볼라 안테나 시설로 직접 수신되고 있다. 즉 통신영역의 위성방송 신호는 방송위성의 신호와 마찬가지로 공중으로부터 송신되고, 또한 수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별 위성수신 안테나 시설의 크기와 비용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어 다른 주파수대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 외에는 위성 유형의 수신시 차이점은 점점 더 희박해져 가고 있다. 일본의 CSTV방송이나 홍콩의 STAR TV는 통신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이며 12개 채널이 할당되어 있고, 통신위성 중계기도 다수 탑재되어 있어 DBS서비스를 비롯, Space Cable TV서비스와 CSTV서비스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DBS채널이 디지털 방식으로 채택된 우리 현실에서는 CSTV까지 혀용하는 것은 방송시장에서의 과도한 다미디어 다채널화를 초래할 소지가 높다. CSTV의 도입은 일본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래 프로그램 수입의 급증과 함께 방송제도상 대폭적인 민간개방의 혀용이라는 측면에서의 폐해도 지적될 수 있겠다.

○ 위성방송 유형과 전송방식

매체	전송방식	수신방식	사례
①DBS (직접위성방송)	방송국→방송위성→수신자	파라볼라안테나(小) Cable TV	일본 NHK(2) 무궁화호(디지털)
②CSTV (Communication Satellite TV)	방송국→통신위성→수신자	파라볼라안테나(大)	STAR-TV Palapa(인도네시아)
③Space Cable Net (SCN)	P·P→방송국 (Cable TV)→가입자	Cable TV	미국, 유럽의 Cable TV
④SMTV (Satellite Master Antena TV)	방송국→방송위성→수신자 방송국→통신위성→수신자	SMATV	미국, 유럽
⑤유료방송	방송국→방송위성→수신자 방송국→통신위성→수신자 P.P→통신위성→ 가입자	Scramble 유료방식	일본(JSB)(1/2) 인도네시아 Palapa HBO(Backyard dish)

III. 위성방송 운용의 원칙과 사업자 선정

방송은 시청자에게 미치는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이나 ‘매체 소유의 재한성’등에 의해 기본적으로 공공성, 공익성이 강조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보장이라는 헌법상의 규범에도 불구하고 공익창출의 범위내에서 공적 규제가 인정되며, 프로그램 내용이나 편성도 공공성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은 모두 공공성, 공익성 확보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지만 이를 구현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지상파방송의 경우에는 규범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방송의 공익성을 담보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종합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의 경우에는 지상파방송보다는 상대적으로 전문성, 창의성, 경제성, 산업성을 촉진하도록 경쟁구도를 장려하는 추세이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방송의 공영론을 주장하는 일각에서는 “민영화와 뉴미디어의 도입은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공영방송 체제에서 장기간 유보해 왔던 방송허가권을 정부가 남발함으로써 정부의 개입주의 성향을 강화할 소지가 있으며, 민영방송의 소유권자로의 기업이나 신문사의 참여는 정경유착으로 인해 언론의 비판 기능을 상실하기 쉽고, 프로그램의 사업성과 오락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방송의 민간개방을 주장하는 일각에서는 “방송독과점체제인 공영방송제도는 방송의 자유화라는 관점에 위배되며 오히려 특정 방송사에 대한 ‘특권’의 개념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경쟁원리가 도입되고, 아울러 방송사업체 설립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분법적인 단순논리는 신방송질서 속에서 방송매체에 부여된 다원화된 목표와 기능을 감안할 때 타당하지 않다. 다매체 다채널 상황속에서는 ‘수신료’에 의존하는 ‘공영제’만으로는 투자재원을 실질적으로 마련할 수 없기 때-

문에 민간개방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민영론자들의 주장처럼 ‘정신상품’을 생산하는 방송매체의 경우 경쟁논리만으로는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확보할 수 없음을 선진국의 사례나 역사적 경험으로도 알 수 있다.

민영론자들은 자유경쟁모델의 정당성이 역사적 발전과정(근대시민사회 형성과정)에서 입증하고 있는 신문매체의 사례와는 달리 방송영역에 있어서는 경쟁의 자기법칙성이 언론의 자유를 제대로 기능하게 할 것이라는 자명한 전제는 아니라는 반론(역사적 사정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요컨대 신방송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핵심적인 방송정책상의 과제는 전체 방송질서하에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사업규모와 사업범위를 여하히 적절하게 설정하느냐에 있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지상파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전후 방송질서를 구축했던 독일은 최근 ‘지상파=공영방송’체제로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담보하고, Cable TV, 위성방송과 같은 뉴미디어방송은 민영방송체제를 통해 방송의 산업성을 강조하는 이원방송체제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민영방송에 대해서는 상업적 이윤추구와 정치적 편파성을 규제하기 위해 민간방송규제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Cable TV와 위성방송은 Cable TV 네트워크로 위성방송의 수신을 정책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매체별 기능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공영방송의 위성방송 참여, 즉 방송매체의 교차소유도 허용되고 있다. 이는 신방송질서로의 이행과정에 있어서 공영방송의 업무범위의 확대를 보장하는 동시에, 신방송질서가 공영방송 주도로 정착함과 아울러 민영방송의 발전범위의 한계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즉 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이라는 것도 공영방송의 ‘시장지배력이나 방송의 자유가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민영방송과의 경쟁’이라는 제한적 경쟁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지상파방송에서 공영방송 BBC와 지역 민간방송의 공민영체제로 운영되던 영국의 방송체제는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을 민간방송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민간방송사업자 선정시 ‘입찰제’의

도입, 전 방송사 프로그램의 외주율 25% 의무화 등으로 방송체제 전반에 경쟁질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영국의 민간위성방송인 BskyB 5개 채널로 전국 방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2000년까지 영국방송시장에서 Cable TV와 위성방송이 차지하는 점유율을 도합 20%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영국에서 Cable TV와 위성방송 사업은 공영방송의 참여없이 민영방송 주도로 실현되고 있지만, 그 시장지배력은 아직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상파방송에서 공영방송 NHK와 5대 민방 TV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해 온 일본은 위성방송을 공민영 혼합체제(DBS-NHK2채널, 민간 JSB1채널, CSTV-12민간채널)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97~'98년 경에 발사될 BS-4직접위성방송 8채널에는 NHK 2채널을 제외하고는 다수 민간사업자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민간상업방송제도가 정착된 미국에서는 최근 통신사업자인 Hughes Communications가 Direc TV로 160여개 채널을 운용하고 있으며, Cable TV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는 산간지역의 시청자를 주요 대상으로 방송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을 제외하고 과거 공영방송체제로 방송질서를 구축해 왔던 선진 제국의 신방송질서로의 이행과정을 볼때, 2000년 대 방송정책의 핵심과제는 공영방송제를 담보한 후 민영을 개방, 경쟁체제를 추구하여 효율적인 공민영질서를 개편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즉 전체 방송체제 또는 방송시장에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영향력과 시장 점유비율, 매체별 기능분담을 여하히 설정할 것인가에 방송정책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 방송환경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위성방송의 경우에는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의 강조와 함께 국제경쟁력과 산업적, 기술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방송국에 대한 규제측면에 있어서도 소유진입제한의 완화나 편성의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를 방송영역권안에 두는 외국 위성방송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CSTV와 외국위성의 임대를 통한

위성방송까지 활성화되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측면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용으로 발사된 무궁화호 위성방송의 경우에는 기존 방송파의 균형과 역할분담을 고려하여 급격한 규제완화보다는 기존의 공영적 방송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효율적 공민영체제를 구축하는 점진적인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본고의 정책기조이다.

따라서 기존 공영 지상파방송인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실체적 위상과 역할이 인정되므로 경쟁적 허가절차 없이 우선적으로 1단계에 시험방송 하여 위성방송의 공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송 사업권을 부여한다.

KBS에 기득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KBS가 난시 청해소, 한민족 프로그램 수행 등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공영 사업주체이기 때문이다.

MBC, SBS를 포함한 지역민방은 공개경쟁을 거치지 않고 특정기업에게 지상파방송과 아울러 위성방송채널을 부여하는 것은 방송사업진출과 참여에 있어서 신규 위성방송 참여희망 사업체와 형평성과 공정경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KBS를 제외한 다른 지상파방송사도 프로그램 제작능력, 인력확보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기존 방송질서 보장측면에서도 조기진입이 타당하나 철저한 준비를 통한 지상파방송 내용과의 차별화를 유도하기 위해 허가상 경쟁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MBC의 경우 주식소유형태나 방송문화진흥회의 성격 등으로 볼 때는 공영적인 성격이 있으나 실제 운영상으로 민영방송사와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KBS와는 달리 민영 방송사와 함께 공개경쟁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대기업, 신문사의 위성방송 참여를 허용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한국적 여건과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여 비보도 전문채널에는 대기업, 신문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도록 하고, 보도전문 채널에는 컨소시엄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업, 신문사

의 방송 겸영제한의 취지는 특정 이익집단의 언론 겸영을 저지하여 이른바 여론형성의 다원화를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논리적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위성방송은 많은 투자비가 요구되고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으로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 방송산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의 참여를 고려하되, 비보도채널 중심으로 제한적인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신문 기업의 방송사업 진출은 매우 활발한데 그 배경은 대규모적인 조직과 설비, 다수의 전문스텝, 자본 등 DBS 도입에 필수적인 규모의 경제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신문사의 뉴미디어 사업참여가 배제될 경우 장기적으로 신문사의 광고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신문사의 방송참여를 허용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과 신문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양면성이 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으로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대기업의 방송소유는 미디어산업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국내 미디어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대외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정책적 선택이기도 하다.

부정적 측면으로는 여론의 다원성 확보하는 차원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시민의 의견형에 대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신문기업이 방송이라는 강력한 미디어를 소유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여론형성에 있어서 위험성이 있고, 자본의 논리에 따르는 대기업이 방송매체를 소유할 경우 자사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공정한 여론 선도 기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위성방송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는 위성방송보다 앞서 도입된 Cable TV에 대한 정부 정책을 고려하고 현재 Cable TV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성방송사업과 어떻게 관계지울 것인지 충분히 검토하여 위성방송 정책과 연계시켜야 두 매체가 상호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종합유선방송국은 전국에 54개이며 정부계획에 의하면, 신도시, 중소도시 등에 추가로 허가하고, 추가확대 이전에 방송구역을 광역화하며 이

미 허가된 지역을 MSO나 기술적 협업들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공급업자도 추가허가하고, '97년 이후에는 유료채널 및 PAY-Per-View 중심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유선방송사업은 사업성과가 현단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이므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로 하여금 위성방송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새로운 사업활로를 개척하고 전체 방송 산업 활성화의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종합유선방송국의 위성방송 참여를 허용하되, KBS 이외에 다른 지상파방송, 신규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경쟁적 허가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Cable TV사업자는 제작시설이나 프로그램 공급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이므로 다른 신규 신청자에 비해 유리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경쟁적 허가절차를 통해 위성방송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MSO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MSO의 위성방송 참여를 허용할 경우 과도한 시장지배와 독점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MSO의 위성방송 참여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매체별로 프로그램공급업자를 구분하는 것은 전체 프로그램산업의 활성화 및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종합유선방송프로그램공급업자도 자유롭게 위성방송에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P.P가 위성방송국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S.O와 마찬가지로 경쟁적 허가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IV. 위성방송 허가절차와 방법

1. 규제기관의 역할분담

방송은 사회에 제공하는 문화적 수단으로서의 방송내용,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수단으로서 방송전파의 송신이기 때문에 방송법은 소프트를 위주로 규율하며, 전파법에 있

어서는 무선국의 일종으로서 방송전파를 발사하는 방송국을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방송국 허가 이전에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공익성의 보장이나 올바른 여론수렴의 기능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보처의 방송국 추천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보처가 방송법의 목적대로 방송의 공적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고 민주적 여론형성과 국민문화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는 자를 정보통신부가 주파수와 출력 등을 배정하고 시설기준을 정해 그대로 시설하도록 하고, 국내 다른 방송, 통신은 물론 인접국을 비롯한 전 세계방송, 통신 전파와 혼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보처와 합의해서 방송무선국으로 허가하고 ITC에 등록하면 방송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행절차를 준수한다면 위성방송의 허가 추천권을 공보처가 관장하고, 무선국으로서 방송국의 최종 허가는 정보통신부가 관장하면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공적 방송규제기구가 위성방송허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을 갖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는 FCC가, 영국은 ITC가, 프랑스에서는 CSA 등 공적방송규제기구가 위성방송국 허가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방송허가과정에서 정부의 허가만으로는 공정성, 특혜시비 뿐만 아니라 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탈락된 단체의 반발로 정치적 부담이 제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위성방송국 허가시에는 프로그램 공급능력, 편성기준, 프로그램 내역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심사내용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기술적 부대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그리하여 소프트웨어의 실질적 심사는 공적방송규제기구에서 심사요건을 충족한 사업자 중에서 정부 담당부처가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허가절차는 공적방송규제기구가 위성방송의 담당하고, 허가시에 실질적 심사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의 정비를 전제로 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 우정성은 '97~'98년경에 발사될 BS-4채널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우정성의 자문기관인 '잔파감리심의위원회'에 백지 위임한 상태이다. 구체적으로 BS-4의 8채널중 기존의 NHK2채널, JSB1채널은 확정되었으나, 지상파 민방의 참여문제(매스미디어 집중배제의 원칙에 위배)등 방송허가절차상의 공정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 자문기구에 일임한 것이다. 과거 JSB신청시에도 우정성은 특혜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민간기업 협의체인 '경단련'(일본 경제단체연합회)에 주주구성을 일임한 바 있고 영국의 민간방송규제기구인 ITC도 지역민방사업자의 허가시에 '입찰제'를 채택하여 정치적 특혜시비를 불식하고자 하였다.

대체로 선진국의 경우에도 정부의 방송정책이 허가·내용규제보다는 기술규제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며, 방송허가와 심의 등의 규제영역은 방송의 공정성, 중립성이 요구되므로 공적방송규제기구에게 그 권한을 대폭 위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사회에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방송환경 변화속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보처와 정보통신부가 통합되고 일원화된 정부부처에서 방송전반의 기본정책 및 기술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방송국의 최종 허가권은 행정적 권한에 속하므로 정부부처에서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같은 인식을 기초로 위성방송국의 허가주체의 역할분담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위성방송국의 최종 허가는 정부가 관장
- 위성방송국의 허가심사권은 공적방송규제기구가 관장

2. 공적방송규제기구

공적방송규제기구는 준입법, 준사법, 준행정적 특성을 갖는 기구로 대표성, 전문성, 독립성, 중립성을 갖추어야 한다. 공적방송규제기구는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통괄 관리하는 통합방송위원회로서 방송기술정책, 행정 등 정부부처가 담당할 일부 영역을 제외한 공적규제의 상당부분

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다매체 다채널시대에는 산업성, 경쟁성이 강조되고 이에 따른 규제완화가 진행되므로 공적방송규제기구는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공적방송규제기구는 인허가 과정에서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며 방송내용의 공공성, 공익성이 허가에 직접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 유지에 기여하여야 한다.

3. 위성방송국 심사방법

(1) 심사위원회 구성안

위성방송국 허가 절차상 규제기관이 실질적으로 직면하는 애로사항은 첫째 위성방송국 허가절차의 투명성 보장 문제이고 둘째 대기업과 신문사 등 정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집단의 사업 참여 범위와 수준을 여하히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여기에서는 위성방송국 허가절차상의 투명성 보장장치로서 실질적 심사권을 공적방송규제위원회가 담당하는 한편, 아울러 공적방송규제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방송전문가, 회계법인, 사회이익단체 대표, 학식과 덕망있는 인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심사 절차상의 전문성과 함께 심사위원회의 사회적 대표성을 확보함으로써,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사업체들이 심사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심사위원회의 구성도 정부가 구성하는 것보다는 공적방송규제위원회에서 구성하는 것이 국민정서상, 허가절차상 공정성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특히 심사위원 구성을 사회내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회이익단체 대표로 구성하는 것은 허가절차상 제가치의 이성적 조정을 도모하면서 사회적으로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변증법적 합의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이다. 허가절차상 공정성은 사회적 통합을 전제로 한 것이며, 사회집단간 이성적인 이해와 대화 등을 통해 합리적인 조정과정을 거칠 때 비로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심사기준

위성방송 허가방법으로 영국의 지역민방 선정방

식과 같은 입찰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 입찰제는 일정한 방송허가기간을 설정한 후 높은 입찰금액을 제시한 입찰자에게 허가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허가절차상 공정성 시비를 원칙적으로 불식할 수 있으나 현 단계로서는 우리나라 국민정서상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본의 위성방송사업자인 JBS허가 그리고 한국의 제2이동통신사업자의 허가시에 채택했던 ‘이해당사자 간의 자율조정방식’은 규제기관의 책임과 권한행사를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케이블 TV와 지역민방허가시에 채택했던 RFP(Request for Proposal)방식은 방송운용 전반에 대한 신청자의 향후 계획을 답안지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여하에 따라서는 허가절차상 공정성 시비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허가방법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다양하고도 엄격한 심사기준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따지고 보면 위성방송의 도입에 따른 정치, 사회적 영향력과 산업적 효과, 그리고 기존미디어질서에 대한 파급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한된 일부 채널을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이든, 다수의 채널을 일시에 수용하는 방안이든 그것이 미치는 다양한 파급효과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 따라서 공적방송규제위원회가 설정할 심사기준을 통과, 합격된 자에게 위성방송 허가권을 우선 부여하는 이른바 ‘개척자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한다.

‘개척자 우선의 원칙’은 단순한 ‘先신청자 先惠의 原則’(First come, first served)의 원칙이 아니며, 심사기준이 요구하는 실질적 내용을 충족시키는 자에게 우선 허가권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를테면 위성방송국 허가 신청자의 ‘프로그램 제작 및 조달능력’은 허가 절차상 주요한 심사기준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RFP방식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신청자가 현재 프로그램 제작 및 조달능력이 전무하더라도 허가계획서만 그럴듯하게 제출하면 평가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척자 우선의 원칙’은 현행 법제상 방송국 허

가기준인 ‘재정적 기초’,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위성방송 허가 후 제작할 프로그램의 견본 또는 파일럿(Pilot)프로그램을 제출하여(예를 들면 20~30편) 실질적인 프로그램 제작 및 조달 능력을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실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함께 ‘프로그램 제작 및 조달능력’에 대한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서 동시에 평가할 수도 있다. 위성방송의 민간개방시 우려되는 ‘방송의 공익성 의지’문제도 RFP방식을 통한 방송운용계획서와 함께 실제 신청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를 통해 검증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위성방송 운용에 필요한 ‘방송인력의 충원 및 양성’, ‘재정규모’, ‘기술여건’, ‘프로그램 편성’, ‘국제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향후 계획과 함께 신청자가 현재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허가권을 부여하는 것이 ‘개척자 우선의 원칙’의 취지이다. 그리고 심사위원회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심사기준과 심사평점에 대해 객관적 지표를 계량화하여 이를 사전에 공개한다면 신청자는 위성방송 진입을 아예 포기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심사기준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방송의 공익성 의지
- 프로그램 제작 및 조달능력
- 방송인력 충원 및 양성능력
- 재정규모(재원조달 방법 및 향후 투자 계획) 및 충실통
- 기술여건(방송제작 설비, 지구국 운영계획 등) 및 적합도
- 프로그램 편성
-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 파일럿 프로그램 제작 평가

이러한 심사기준 및 심사평점은 사전에 공개하고, 사후에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평가한 평가결과 및 각 심사위원의 평점을 공개하도록 한다.

V. 정책쟁점

1. 프로그램 공급 문제

다미디어 다채널 시대의 도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케이블 TV의 경우 30개 정도의 채널을 활용하게 될 것이고, DBS채널도 12개 채널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채널의 확장에서 비롯된 프로그램 수요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우리 프로그램 제작능력으로 보아 자체 조달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유럽과 일본에서는 뉴미디어 방송의 경우 스포츠와 뉴스를 제외한 퍽션프로그램의 60~70% 이상이 미국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와 같은 미국산 프로그램의 대외진출현상은 대외시장 개방압력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보산업 육성을 위해 뉴미디어 방송도입을 유럽과 일본 방송정책의 결과라고 이해된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프로그램 공급육성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사업자의 선정절차에 우선하여 범국가적으로 프로그램 공급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영국에서 채택한 ‘BBC의 PD선택제’와 ’90년 방송법에서 보장한 ‘프로그램 외부발주제’와 같은 과감한 프로그램 육성책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영국은 모든 방송프로그램의 25%를 외부발주를 의무화함으로써 기존 방송사의 제작진들이 프로덕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구매력을 보장해 주고 있다. 프로덕션을 설립한 제작진들은 기존 방송사의 안정된 구매력을 바탕으로, Cable TV와 위성방송에도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방송의 대외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송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산업육성, 인력육성이 필연적인 선택인 바, 기존 방송사의 인력들이 신규 프로덕션

시장으로 과감히 진출할 수 있는 시장메카니즘을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2. 개방문제

금세기 최대의 교역협상인 우루파이라운드(UR)가 극적으로 타결되었지만 정작 핵심영역인 서비스분야별 시장자유화 협상에서는 당초에 의도하던 협상성과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전세계 영상시장의 4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은 EU에 개방압력을 가했으나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국가들은 ‘문화의 특수성’을 내세워 이를 거부한 것이다. 그 결과 TV, 영화, 음반 등 ‘시청각분야’에 대한 미국과 유럽공동체(EU)간의 분쟁은 우루파이라운드의 성공적인 타결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는 2~3년 후에 WTO체제에서 재협상을 갖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방송의 국제화’는 거부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며, 각국의 방송질서,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체제, 방송서비스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방송미디어를 존립시키는 사업적, 규제적 틀이었던 국가단위의 정보주권의 개념을 더욱 희박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 심각한 개방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에서의 한국 방송시장에 대한 쌍무협상 방식을 통한 시장개방 요구라 하겠다. 우선 케이블 TV와 위성방송 프로그램 수입률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위성방송에 대해서는 채널 할당까지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단계에서의 개방에 대한 우리의 대응자세는 프로그램의 수입은 현실적으로 인정하되, 외국인의 방송사업자로서의 참여는 ‘방송사업의 외국성 배제의 원칙’의 의거 가능한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조만간 아시아에서도 7개 정도 위성방송이 실시될 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30~50개 정도의 채널 프로그램이 전파월경 현상으로 인해 무차별로 한국에 범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Cable TV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 전파되는 위성방송 프로그램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방송규제 기관의 입장에서는

음란물이나 정치적으로 유해한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를 케이블 TV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수신자 입장에서는 파라블라안테나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수신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이와 같은 정책방향은 위성방송의 전파월경은 국제간의 법리적 논쟁의 차원을 떠나 실질적으로 개방할 수 밖에 없다는 전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3.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의 관계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의 관계를 완전경쟁체제로 구축할 것인지, 또는 보완적 경쟁, 보완적 협력체제로 구축할 것인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요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Cable TV와 위성방송이 상호경쟁 체제로 발전했기 때문에 미국은 Cable TV, 일본은 위성방송이 활성화 되었지만, 반대로 미국에서는 위성방송, 일본에서는 Cable TV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유럽에서는 위성방송으로 송신된 프로그램을 Cable TV가 수신하여 가입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상호보완적 매체로 자리잡고 있다. 즉 ‘Cable TV+위성방송=뉴미디어 방송’이라는 인식이 유럽에서는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유럽에서는 국경없는 TV계획에 의해 EU국가간 위성방송으로 프로그램을 전송하며, 케이블로 수신하는 방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Cable TV와 위성방송이 거의 동시에 도입된다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가능하면 위성방송 프로그램을 Cable TV로 수신하는 방법을 검토해볼만 하다. 여기에는 위성방송 사업자와 Cable TV사업자간의 효율적인 요금문제, 저작권 문제의 해결 등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 그러나 SMATV와 위성방송 전용수신기의 보급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수신자 주권이 확보될 수 있다. 단말기 보급의 자유화 원칙이나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위성방송 접촉방식이 보장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즉 위성방송과 Cable TV의 관계는 ‘협력적 경쟁관계’구도 속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4. 프로그램공급업자의 자유화

공공성, 공익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내용규제는 편성권을 갖는 위성방송국에 대해 적용하고,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등록제로 자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그램공급업을 자유화하는 취지는 종합유선 방송의 경우 P.P로 참여한 사업체들이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지체로 인해 상당한 경영상의 손실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체별로 프로그램공급업자를 구분하여 활동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전체 프로그램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성방송이 도입되었을 경우 매체별 프로그램 공급 제한을 해제하여 프로그램 공급업자가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창구를 다원화하는 것이 우리나라 영상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공급업자가 위성방송에도 프로그램을 공급함으로써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업자의 활성화와 위성방송의 상호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프로그램공급업은 종합 유선방송, 위성방송 등으로 구분한 매체별 허가제가 아니라 시설과 자본에 관한 일정 조건을 규정하여 등록제로 해야 할 것이며, 향후에는 프로그램공급업자들이 방송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비디오, VOD, 영화, 광고의 제작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창구를 개방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프로그램공급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고 등록하여 프로그램 제작, 공급을 하다가 국내외의 위성채널을 임대받아 위성방송국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프로그램 내용, 편성방향 및 기술적 부대사항 등을 심사받아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는 편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성방송에 대한 편성상의 최종 책임은 위성방송국이 지도록 하며, 위성방송의 외국 프로그램 방송비율, 자체제작비율 등의 규제도 프로그램공급업자에 대하여 할 것이 아니라 위성방송국의 종합적인 편성결과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5. 지구국 문제

위성방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1) 위성 체계에 탑재된 중계기에 해당하는 우주국과 (2) 지상에서 중계기에 방송신호를 송신하는 기능을 갖는 방송지구국, (3) 위성의 자세나 우주국의 환경을 제어하는 관제국의 설치가 필요하다.

송신지구국의 시스템은 시분할방식과 주파수분 할방식으로 구분되는데, 무궁화위성은 디지털방식으로 시분할방식에 해당하며 중계기별로 채널을 묶어서 동일송신국에서 송신하게 된다. 아날로그방식인 주파수분할방식은 각 채널마다 별도의 송신국을 두어 운용되는 형태이다.

현재 지상에 설치될 송신지구국은 한국통신에서 용인의 위성판제소 부지내에 방송통신용 지구국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며,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지구국을 임대해 줄 계획이다. 또한 위성방송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주송신국은 부평, 부송신국은 대덕에 별도 설치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KBS에서도 별도로 위성방송에 대비하여 송신지구국을 설치하기 위해 '93년도에는 국내 가전업체를 대상으로 지구국 선설구매에 관한 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 이미 기술규격이 완성된 상태이며, 지구국 설치에 관한 비용을 예산으로 책정하는 등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어 지구국운용에 대해 한국통신측과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위성방송지구국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은 (1) 통신방송통합설치운영모델과 (2) 방송용지구국을 일괄설치하는 모델 (3) 개별 방송사별 독자소유보델을 가정할 수 있다.

(1) 통신방송통합설치운영모델은 무궁화위성과 같이 통신방송 복합위성일 경우 효율적이다.

(2) 방송용지구국 일괄설치모델은 투자비의 절감과 시설공기의 단축, 운용 관리 측면에서 효과적이지만 지구국 임대료에 대한 적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 위성방송지구국을 별도로 건설, 운영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방송의 독립성과 송출자유, 방송의 품질관리와 운영의 효율성, 수용자에 대한 책임 구현, 방송운용 시스템의 단순화로 미래 환경변화에 용이하게 대

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위성방송지구국과 위성통신지구국을 일괄설치 운영하게되면 방송사의 위상 약화와 지상파시스템과의 상이로 인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지구국 임대자측과 사용자측 간 과다한 요금문제로 마찰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3) 방송사별 독자소유모델은 방송운영의 자율성과 책임한계는 분명해지나 과도한 중복투자로 낭비적 요소가 크고 기술의 표준화와 발전을 위해 서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단점이 있다.

따라서 위성방송 초기에는 무궁화위성이 통신방송 복합위성인 점을 고려하여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통신·방송 통합지구국 설비 이용이 유리하다.

그러나 앞으로 (1) 통신위성과 방송위성으로 분리된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 장기적으로 대비하고, (2)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위성방송국 수 등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효율적으로 부응하며, (3) 방송 송신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방송용

지구국 설비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추후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무궁화위성의 지구국 운영에 있어서도 KBS 충분한 준비와 예산을 갖고 방송용지구국을 별도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장, 단점 등을 고려하여, KBS, 한국통신,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선국의 허가 및 준공검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 수신설비 조건 등 방송을 위한 제반 기술적 측면은 정보통신부의 업무 영역이다. 따라서 위성방송 송신지구국은 전송설비 이므로 지구국의 기술수준 및 표준화 문제 등은 현 정부조작법의 취지에 의거하여 정보통신부에서 시설, 기준 등을 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향후 뉴미디어 발달과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방송환경 변화속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부정책의 수립을 위해 방송 및 통신에 관한 소관 정부부처가 통합될 경우에는 일원화된 방송통신통합부서에서 관장하여야 할 것이다.

저자 소개

鄭允植 1988년 8월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졸업(언론학 박사)

1986년 11월~1995년 2월 통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995년 3월~현재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조교수